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11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이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, 해당 법령에 맞추어 정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호로 나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.

2. 수정주요내용

가. 정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규정함(안 제2조).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
2. 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
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 수정안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·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통사찰”이란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·음악·미술·건축·음식·의상·공예·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</p> <p>2. 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”로, “사항과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”을 “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전통예술 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
2. 전통생활양식 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

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

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u>다.</u></p> <p>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, 전통사찰 보존·관리·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</u> 3. (생략) <p>제9조(전통사찰보존위원회) ① 시장은 「<u>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<u>전통사찰보존위원회(이하 "보존위원회")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제7조, 법 시행령제8조 및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</u>를 따른다.</p>	<p><u>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<p><u><삭 제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(현행과 같음) <p><u><삭 제></u></p>